

공개자료



# 한·터키 FTA 상세설명자료

2012. 7



KOREA-TURKEY FREE TRADE AGREEMENT

관계부처 합동



※ 동 설명자료는 한·터키 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정문의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되었으며 자료상의 용어는 협정상의 법률적 용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

# Contents · 목차



|   |            |    |
|---|------------|----|
| 1 | 협정문 구성     | 1  |
| 2 | 서문 · 최초 규정 | 2  |
| 3 | 지식재산권      | 4  |
| 4 | 경쟁         | 7  |
| 5 | 투명성        | 10 |
| 6 |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| 11 |
| 7 | 분쟁해결       | 14 |
| 8 | 제도         | 18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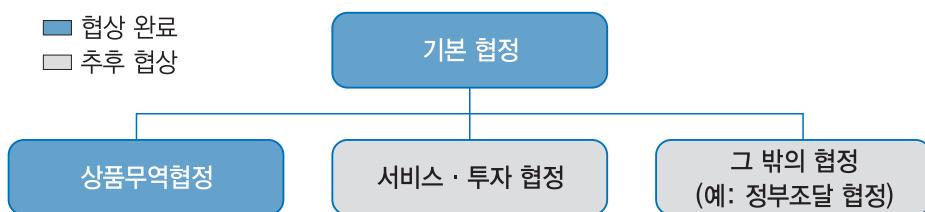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
| <b>9</b>  | 상 품              | 19 |
| <b>10</b> | 원산지 규정           | 30 |
| <b>11</b> | 원산지 절차           | 37 |
| <b>12</b> | 관세 및 무역원활화       | 40 |
| <b>13</b> | 무역구제             | 43 |
| <b>14</b> |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(TBT) | 46 |
| <b>15</b> | 예외 및 최종 규정       | 48 |



# 1 협정문 구성

## ■ 협정문 구성

- 기본협정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, 서비스 · 투자 협정 및 그 밖의 협정으로 구성



## ■ 기본협정 구성

| 장(Chapter) | 분야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          |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|
| 2          | 지식재산권       |
| 3          | 경쟁          |
| 4          | 투명성         |
| 5          |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 |
| 6          | 분쟁해결        |
| 7          | 제도          |
| 8          | 예외 및 최종규정   |

## ■ 상품무역협정 구성

| 장(Chapter) | 분야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          | 일반정의                |
| 2          |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|
| 3          | 통관 및 무역원활화          |
| 4          | 무역구제                |
| 5          |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(TBT)    |
| 6          | 최종규정                |
| 의정서        |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      |



# 2 서문 · 최초 규정

## ■ 서문

- 양국간 우호 관계, 투명성 증진, 상호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확대, WTO 등 다자 무역체제의 강화, 노동 및 환경법과 정책의 개발·집행 강화 등을 확인

## ■ 최초 규정

### 1. 협정간의 관계 (기본협정 제1.4조)

- 한 터키 FTA가 △ 기본협정(Framework Agreement), △ 상품무역협정(Agreement on Trade in Goods), △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(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and on investment) 및 △ 그 밖의 협정(any other agreements)으로 구성됨을 규정
  - 정부조달 분야를 향후 체결될 수 있는 분야별 협정의 하나로 예시
  - 상기 협정들이 한 터키 FTA를 구성하는 법적문서(legal instruments)의 일부임을 명시

### 2. 자유화 규정 (기본협정 제1.5조)

- 양국간 상품무역,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는 의무를 규정
  - GATT 제24조 및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상품무역의 점진적 자유화 의무 규정
  - GATS 제5조에 따른 양국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의 점진적 자유화 의무 규정
-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고, 상품 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규정

### 3. 분쟁해결 (기본협정 제1.6조)

- 한·터키 FTA를 구성하는 기본협정, 상품무역협정, 그 밖의 협정이 기본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 대상임을 규정
  - 서비스무역·투자 협상 목표 시한은 분쟁해결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



# 3 지식재산권

## 개요

-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 및 권리관리정보를 보호
-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(한국 : 2개, 터키 : 2개)를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상호 보호
- 지재권 보호와 관련 정보 교환 및 다양한 협력 활동을 규정

## 상세 내용

### 1.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(기본협정 제2.2조)

-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(기본협정 제2.2조 제2항)

#### 기술적 보호조치(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)

-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조치로,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대별됨.
    - 이용통제(use control): 저작물의 복제, 전송, 배포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통제
    - 접근통제(access control):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
- ※ 예: 암호를 넣어 이를 해제하여야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조치

■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아래 행위 금지(기본협정 제2.2조 제3항)

-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· 변경하는 행위
- 고의로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· 변경된 저작물 등을 배포 · 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

**권리관리정보(Rights Management Information)**

- 저작물, 권리자, 이용조건 등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,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지칭

## 2. 상 표 (기본협정 제2.3조)

- 유명상표가 동일 ·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된 경우, 동 유명상표의 등록, 유명상표 목록에의 등재, 유명상표로서의 사전인지(認知) 여부에 관계없이 구제 제공(기본협정 제2.3조 제4항)
- 상표등록 거절이유의 서면통지, 등록거절에 대한 이의제기와 사법적 불복청구 기회 부여 및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 부여(기본협정 제2.3조 제5항)
-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은 제한적 예외 인정(기본협정 제2.3조 제3항)

## 3. 지리적 표시 (기본협정 제2.4조)

**지리적 표시(GI: Geographical Indication)**

- 상품의 특정 품질,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, 특정 지역, 지방,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 (WTO TRIPS 협정 제22조)



- 양국은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(한국 : 2개, 터키 : 2개)를 TRIPS 협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국법에 따라 상호 보호

※ 양측의 지리적 표시 목록

- 우리 : 고려홍삼, 고려백삼
- 터키 : 헤레케 카펫, 블얀 카펫

《 우리 기체결 FTA 지리적 표시 보호 현황 》

| 구 분 | 한 · 칠레 FTA | 한 · EU FTA | 한 · 폐루 FTA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우리  | 3          | 64         | 82         |
| 상대국 | 3          | 162        | 4          |

- 협정발효 후에도 양국 합의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 추가 가능

#### 4. 인터넷상의 지재권 집행 (기본협정 제2.5조)

- 인터넷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시행(기본 협정 제2.5조 제2항)

#### 5. 점검 및 검토 (기본협정 제2.6조)

-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, 일방당사국의 요청시 공동위원회에서 논의 가능
- 협정 발효 3년후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동 협정문의 이행 점검 및 더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협의 개시

# 4 경쟁

## 개요

- 경쟁챕터의 목적, 경쟁당국 및 경쟁법 유지 등 이행 의무, 통보·협의·비밀이 아닌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한 경쟁당국간 협력, 공기업에 대한 국내 경쟁법 적용 등을 규정

## 상세 내용

### 1. 목적 및 이행

- 자유경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, 반경쟁적 행위로 무역 자유화 혜택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의 경쟁법을 적용(기본협정 제3.2조)
  - 경쟁 제한적 행위는 ① 경쟁제한적 목적 또는 효과를 지닌 사업자 간 합의 및 동조적 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결정, 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, ③ 경쟁을 중대하게 줄이는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의미(기본협정 제3.1조)
  - FTA 체결로 인해 상품·서비스의 무역 자유화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카르텔 행위 등이 빈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경쟁법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, 무역자유화 효과가 반감될 것임
- 경쟁제한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포괄적 경쟁법 및 경쟁법 집행을 책임지는 경쟁당국 유지 의무를 규정(기본협정 제3.3조)
  - 경쟁법 집행시, 경쟁당국은 투명성, 적시성,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 준수
  - 동 협정 목적상, 경쟁법은 한국의 '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' 및 하위법령과 터키의 '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54호' 및 하위 법령을 의미(기본협정 제3.1조)



## 2. 경쟁당국 간 협력

- 양 당사국은 경쟁법 집행의 효과성 제고 및 FTA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쟁당국 간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며,
  - 통보 협의 공개 가능한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 및 집행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(기본협정 제3.4조)
- 협의(기본협정 제3.5조)
  - 양 당사국의 상호 이해 증진 또는 경쟁챕터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, 상대국 요청시 협의 개시
  -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상대국의 우려 사항을 충분하고 호의적으로 고려
- 통보(기본협정 제3.6조)
  -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당국의 집행 행위는 원칙적으로 초기 단계에 상대국 경쟁당국에 통보
- 비밀유지(기본협정 제3.7조)
  - 경쟁법 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,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주거나 당사국의 비밀유지 관련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, 상대국 경쟁당국의 정보 요청 시 당사국 경쟁당국은 해당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
  - 경쟁당국은 기밀을 전제로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, 정보제공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어떠한 주체에게도 해당 정보의 공개 불가

### 3. 공기업 (기본협정 제3.8조)

- 각 당사국은 공기업의 설립 · 유지 가능
- 단, 당사국은, 해당 기업의 업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공기업이 경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,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제한적 행위를 채택 ·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

### 4. 분쟁해결 (기본협정 제3.9조)

- 경쟁챕터 관련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FTA의 양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



# 5 투명성

## 개요

- 투명성 분야는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의무 사항 규정
- 한·EU FTA 내용과 유사하나,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정

## 상세 내용

### 1. 정보교환 (기본협정 제4.1조)

-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국내법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협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응답
  - 비밀 정보 공개 요구는 미허용

### 2. 공표 및 행정절차 (기본협정 제4.2조)

-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법, 규정 및 행정 판정을 공표
- 국내법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법, 규정 및 행정 판정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해 사전 공지
  -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상기 조치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 제공

### 3. 재심 및 상소 (기본협정 제4.3조)

-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행정 행위를 재심하기 위한 공평하고 독립적인 사법,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/절차를 수립·유지
  - 재판소/절차에서 각자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 및 기록에 근거한 결정이 제공되도록 보장
  - 자국법의 상소 또는 추가 재심 규정에 따라 재판소 결정 이행을 보장

# 6 무역과 지속가능발전

## ■ 개요

- 국제노동기구(ILO) 1998년 선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, 양당사자가 각각 비준한 다자간 환경협정(MEA)의 이행 의무를 규정
- 국내법 적용 및 집행시 무역과 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환경이나 노동의 보호 수준을 저하하는 것을 금지함을 명시
  - 그러면서도 각국이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설정하고 관련 법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

## ■ 상세 내용

### 1. 국제노동기준 핵심원칙 준수 (기본협정 제5.4조)

- “2006년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”을 통해 합의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일자리의 중요성 재확인
- 「1998 ILO 선언」상의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원칙 존중, 증진 실현 약속
  - ※ 「1998년 ILO 선언」상 핵심노동기준 :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, 강제근로금지, 아동노동금지, 차별철폐
- 각자 비준한 ILO 협약의 효과적 이행 재확인
  - ※ 우리나라 제100호 남녀 동등보수 협약, 제111호 고용 직업상 차별금지 협약, 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,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에 가입



## 2. 다자간 환경협정 (MEA) 이행 (기본협정 제5.5조)

- 이행 의무대상 다자간 환경협정(MEA) 이행 의지 확인
  - 각국이 가입한 다자간 환경협정(MEA)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
- 기후변화협약 이행 의지 확인
  -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 이행 의지 재확인
    - 발리 행동계획(Bali Action Plan)에 따라 향후 국제기후변화 체제 논의에 협력하기로 합의

## 3. 자국법 등의 적용 · 집행상 보호수준 저하금지 (기본협정 제5.7조)

-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 노동 · 환경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을 명시
-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법상 노동 및 환경의 보호수준을 약화 또는 저하시켜서는 안됨을 명시

## 4. 투명성 (기본협정 제5.9조)

- 양국은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, 도입 및 이행하기로 합의

## 5. 노동 · 환경분야 협력 (기본협정 제5.10조)

- 동 챕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간의 다양한 협력활동을 규정
  - 국제 노동 또는 환경협정 비준 증진, 무역 관련 측면의 국제 기후변화체제 · 생물다양성 · 지속가능한 어업 · 국제노동기구에서 양질의 일자리 의제 관련 활동, 산업오염 방지 등

## 6. 이행 메커니즘 (기본협정 제5.11~5.12조)

- 양국은 동 챕터의 이행 감독을 위해 노동과 환경문제에 관한 접촉선을 각각 지정하여 정보 교환
  -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지정

※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국 관련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작업반을 설치하여 진행(기본협정 제5.12조)



# 7 분쟁해결

## 개요

### ■ 분쟁해결절차는 WTO 협정 및 기체결 FTA의 분쟁해결절차와 유사

- ① 당사국간 협의 → ② 패널 설치 → ③ 패널보고서 제출 → ④ 패널 보고서의 이행 → ⑤ 보상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”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규정

### ■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소국은 선택가능

- 다만,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FTA와 WTO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경우,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절차의 이용을 불허

### ■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

-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여,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

– 패널 설치일 120일(최대 150일)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

- ‘부패성 상품’ 등의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축 시한 적용

- 패널 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, 패널보고서의 구속성을 명시하고, 불이행 시의 보상 및 혜택정지(보복) 절차를 규정

### ■ 서면자료 제출, 심리 절차, 입증책임 등 패널의 세부 절차사항 및 중재패널 구성원의 의무 사항은 부속서(중재절차 규칙, 중재패널 구성원에 대한 행동 규범)에 별도 규정

## ■ 상세 내용

### 1.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범위

- 경쟁, 무역과 지속가능발전, SPS,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,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및 서비스 · 투자 협정 협상 목표 타결 시점 등을 제외한, 한-터키 FTA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적용
- 제안 단계에 있는 조치(proposed measure)는 패널 절차 대상에서 제외

### 2. 분쟁해결절차 선택 (기본협정 제6.3조)

- 한 · 터키 FTA에서는 포럼 선택 조항을 규정함으로써, 복수의 분쟁해결 포럼의 관할 중복에 따른 절차적 불확실성을 최소화
  -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소국은 선택 가능
  - 다만, 포럼 쇼핑(forum shopping)을 방지하기 위해,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FTA와 WTO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경우,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절차의 이용을 불허
  - 일단 하나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분쟁해결절차가 절차적, 관할적 이유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는 한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다른 분쟁해결 절차 이용 불가

### 3. 협의 (기본협정 제6.4조)

- 제소국의 협의 요청시, 요청 접수일 이후 30일 이내에 협의 개최



#### 4. 중재패널 절차 (기본협정 제6.5조~제6.10조)

- 협의 요청 접수일 이후 30일 이내에 분쟁 미해결시, 제소국은 중재패널 설치 요청 가능
  - 중재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, 중재패널 설치일은 중재인이 임명된 날
  - 중재패널은 비공개이며, 중재패널에 제출된 자료는 비밀로 취급
- 패널은 패널 설치일 90일(최대 120일) 이내에 잠정보고서 제출
- 패널은 패널 설치일 120일(최대 150일)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

#### 패널 구성

- 패널은 3인의 패널리스트로 구성
- 3인 중 2인은 각 당사국이 1인씩 지명하고, 패널 의장인 나머지 1인은 양국이 합의
- 양국이 합의하는 경우,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서 작성된 예비명부(각 당사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10인)에서 공동위원회의 의장이 선정

#### 긴급 사안(urgent matters)에 대한 분쟁해결기간 단축

- 부패성 상품을 포함한 긴급 사안의 경우,
  - 잠정패널보고서 제출 시한 : 패널 설치 이후 90일(최대 120일) → 45일(최대 60일)
  - 최종패널보고서 제출시한 : 패널 설치 이후 120일(최대 150일) → 60일(최대 75일)

#### 5. 패널보고서의 이행 (기본협정 제6.11조)

- 패널보고서는 당사국에 구속력이 있으며, 패널보고서가 조치의 위반을 판시한 경우에는, 피소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반성(non-conformity) 제거 의무

- 양국은 최종패널보고서 제출 이후 45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고, 미합의시 제소국이 중재패널에 회부, 중재패널이 합리적인 기간 결정
- 피소국은 중재패널 권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보
  - 합리적인 기간 내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시 중재패널 회부 가능

## 6. 보상 또는 의무의 정지 (기본협정 제6.12조)

- 피소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 조치를 통보하지 않거나,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, 또는 중재패널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,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보상 협상 개시
- 보상 협상 요청 접수 20일 이내에 보상 미합의시, 제소국은 통보 후, 한·터키 FTA 협정 상 의무 적용 정지 가능
  - 의무 정지는 위반성이 완전히 제거되거나,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때 까지 적용



# 8 제 도

## 1. 공동위원회

- 운용 : 양국 통상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(Joint Committee) 설치
  - 원칙적으로 매년 서울 또는 앙카라에서 교대로 개최
- 주요 권한 : ① 협정의 이행과 적용 감독, ② 협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반의 작업 감독, ③ 협정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 강구, ④ 협정의 개정 권고
- 의사결정 :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사안에 대해 양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절차 준수를 전제로 결정(decision)을 하거나, 권고(recommendation) 가능
  - 공동위원회의 결정(decision)은 양국에 구속적인 효력을 가지며, 각각의 국내 절차에 따라 이행할 의무 부여

## 2. 위원회 및 작업반

- 공동위원회 산하에 위원회, 작업반 등을 설치
- 위원회 및 작업반은 일정 · 의제 · 활동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존재

# 9 상 품

## ■ 개요

- 관세 인하 또는 단계적 철폐, standstill 등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 각종 의무사항은 협정문에 규정하고, 양허유형 및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정은 부속서에 규정
-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보장의무 규정

## ■ 상품 협정문

### 1. 관세 인하 또는 철폐 (상품무역협정 제2.4조)

- 부속서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각 품목의 관세를 인하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
  - 일방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,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와 그 범위의 확대를 위해 협의할 의무를 부여

### 2. 수입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 (상품무역협정 제2.8조)

- 수입 수수료의 경우, GATT 제8조에 따라,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소요된 대략적인 비용과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
  - 추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종가세(ad valorem) 형태의 수입 수수료는 부과될 수 없음을 명시



### 3.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 (상품무역협정 제2.11조)

#### ■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

- 아울러, 양자간 무역에 불필요한 제한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준비·채택·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규정

### 4. 상품위원회 설치 (상품무역협정 제2.13조)

#### ■ 어느 한쪽 당사자 또는 공동위원회 요청시, 상품위원회 개최

- 상품위원회의 기능은 △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와 그 범위의 확대를 포함한 양자간 무역 촉진, △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·비관세조치 검토, △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관련 사안의 논의 및 정보 교환을 위한 포럼 제공 등을 포함

## ■ 상품 양허

-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교역 증진 기대

※ 한·터키 교역(2011년): 총 59억불 (对터키 수출 51억불, 수입 8억불)

- 양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10년이내 약 100% 관세철폐 달성

※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는 92.2%, 터키는 89.8%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

### 《 한·터키 FTA 전체상품 양허수준 비교 》

(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, 수입액은 2007–2009 평균 수입액 기준)

| 양허단계          | 우리 양허  |       |          |       | 터키 양허  |       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| 품목     | 비중    | 수입액(백만불) | 비중    | 품목     | 비중    | 수입액(백만불) | 비중    |
| 즉시            | 9,559  | 80.5  | 296.4    | 82.5  | 7,868  | 65.0  | 2,064    | 53.8  |
| 3년            | 200    | 1.7   | 14.4     | 4.0   | 350    | 2.9   | 338      | 8.8   |
| 5년            | 434    | 3.7   | 25.4     | 7.1   | 975    | 8.1   | 588      | 15.3  |
| 7년 비선형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| 4      | 0.0   | 169      | 4.4   |
| 7년            | 150    | 1.3   | 2.7      | 0.8   | 869    | 7.2   | 676      | 17.6  |
| 10년           | 609    | 5.1   | 18.8     | 5.2   | 801    | 6.6   | 1,7      | 0.0   |
| (10년내소계)      | 10,952 | 92.2  | 357.8    | 99.6  | 10,867 | 89.8  | 3,837    | 100.0 |
| 관세감축(RD)      | 134    | 1.1   | 0.2      | 0.1   | 175    | 1.4   | 0.0      | 0.0   |
| 양허제외          | 795    | 6.7   | 1.2      | 0.3   | 1,060  | 8.8   | 0.2      | 0.0   |
| E(standstill) | 599    | 5.0   | 1.1      | 0.3   | 748    | 6.2   | 0.1      | 0.0   |
| standstill배제  | 180    | 1.5   | 0.0      | 0.0   | 312    | 2.6   | 0.0      | 0.0   |
| R             | 16     | 0.1   | 0.0      | 0.0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|
| 총합계           | 11,881 | 100.0 | 359      | 100.0 | 12,102 | 100.0 | 3,837    | 100.0 |



- 공산품의 경우, 우리의 對터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(최고 22%관세율 적용중), 철강(23.4%), 칼라TV(14%)를 포함하여 터키로 수출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7년 이내 관세 철폐
    - 반면, 우리의 對터키 수입품 중 40%가 석유, 아연광, 동광 등 광물 제품인 바한·터키 FTA 체결로 인한 추가 개방 부담은 미미
- ※ 2011년 우리의 對세계 수입액(5244억불) 중 對터키수입액(8억불)이 차지하는 비중은 0.2%에 불과
- 농수산물의 경우, 한·터키간 농수산물의 교역이 적고('07~'09 평균 對터키 수입액 43백만불) 주요 민감품목이 양허제외로 타결되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
- ※ 우리는 쌀, 쇠고기, 돼지고기, 고추, 마늘, 양파, 포도, 오렌지, 명태, 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 795개 품목(품목수 기준 40.7%)에 대해 양허제외

## 《한·터키 상품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》

(품목수 HS 10단위 기준)

| 한국 양허   |       | 양허유형                  | 터키 양허 |   |
|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주요 품목   | 품목수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품목수   | 주요 품목   |
| 파스타, 토마토페이스트, 건포도, 토마토케찹, 조제식료품, 타임및월계 수잎, 밀(사료용), 공기조절기, 금속절삭 가공기계, 냉장고, 모자, 아연광, 양탄자, 의료용기기, 광물성연료(나프타, 원유) | 9,559 | 즉시 철폐                 | 7,868 | 인스턴트커피, 담배(완성품), 라면, 소주, 김치, 맥주, 한천, ABS 합성수지, 기타플라스틱제품, 일부평판압연제품, 기타알루미늄제품, 신변장식용품, 포트랜드시멘트, 합판, 섬유판, 파티클 보드, 조립식목재건축물, 철도차량부품 |
| 내시경, 농약, 밸브, 베어링, 변압기 부품, 펌프, 계측기, 대리석  | 200   | 3년 철폐                 | 350   | 차량용고무타이어, 공기조절기, 원동기 와펌프, 볼트와너트, 가열난방기  |
| 초콜렛(속을채운것) 올리브유(버진), 드롭프스, 레몬 스파게티, 사탕수수, 참다랑어, 조립식목재건축물, 제재목, 전동축, 알루미늄의 판·쉬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34   | 5년 철폐                 | 975   | 밀의글루텐, 인삼류, 선인장, 청어, 기타자동차부품, 면사, 편직물, 일부합성 필라멘트사, 합성필라멘트사직물, 냉장고, 전동기, 가솔린/디젤 중·대형   |
| -   | 0     | 7년 비선형                | 4     | 가솔린/디젤 1600cc이하 소형승용차 (4개세번)  |
| 잼, 버터조제품, 헤즐넛, 무화과(신선/건조), 양모사, 섬수모사, 직물, 합판, 섬유판, 파티클보드(PB)  | 150   | 7년 철폐                 | 869   | 튤립, 글라디올러스, 밀크알부민, 양모및섬수모흔방직물, 기어박스, 평판 압연제품, 칼라 TV, 세탁기  |
| 잎담배(오리엔트종), 밀가루, 레몬 주스, 와인, 파래, 김, 피스타치오  | 609   | 10년 철폐                | 801   | 잎담배(황색종), 양배추, 오이, 감자 고등어, 연어, 넘치, 참다랑어   |
| 보조사료, 해삼, 멸치  | 134   | RD<br>(관세감축)          | 175   | 요구르트, 추잉껌, 마가린, 설탕과자, 송어  |
|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고추, 마늘, 양파, 포도, 오렌지, 감귤, 갑오징어 (냉동), 꿀, 전복, 밤, 잣, 대추, 호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99   | E<br>(양허제외)           | 748   | 혼합주스, 파인애플, 버찌, 살구  |
| 기타컬럼, 로얄제리, 아이스크림   | 180   | NS<br>(standstill 배제) | 312   | 닭고기, 우장, 치즈, 베  |
| 쌀   | 16    | R                     | 0     | -   |

※ RD : 양측 양허스케줄 비교란에 적시된 감축 관세율 적용

E : 양허표상의 기준 세율 유지(standstill) 의무 적용)

NS : standstill(동결)의무로부터 제외(적용세율을 WTO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)

R : FTA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품목으로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



## ■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

### 1. 공산품

- 양측 모두 공산품 전품목에 대해 7년내 관세철폐 달성 및 높은 수준의 5년내 조기 관세철폐 달성
  - ※ 수입액 기준, 우리는 99.8%, 터키는 77.9%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철폐
  - ※ 품목수 기준, 우리는 98.7%, 터키는 91.2%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철폐
- 우리의 대터키 주요 공산품 수입은 원유, 나프타, 아연광 등 자연광물로 우리 주요 수출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품목이며, 여타 터키측 공산품도 경쟁력이 높지 않아 한·터키 FTA로 인한 실질적 추가 개방 효과는 제한적

### 《 한·터키 FTA 공산품 양허수준 비교 》

(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, 수입액은 2007~2009 평균 수입액 기준)

| 양허단계  | 우리 양허 |       |          |       | 터키 양허 |       |          |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      | 품목    | 비중    | 수입액(백만불) | 비중    | 품목    | 비중    | 수입액(백만불) | 비중    |
| 즉시    | 9,365 | 94.3  | 292.9    | 92.9  | 7,389 | 77.8  | 2,059    | 53.8  |
| 3     | 200   | 2.0   | 14.4     | 4.6   | 350   | 3.7   | 338      | 8.8   |
| 5     | 233   | 2.4   | 7.6      | 2.4   | 913   | 9.6   | 587      | 15.3  |
| (5년내) | 9,798 | 98.7  | 314.9    | 99.8  | 8,652 | 91.2  | 2,985    | 77.9  |
| 7A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| 4     | 0.0   | 169      | 4.4   |
| 7     | 129   | 1.3   | 0.5      | 0.2   | 835   | 8.8   | 676      | 17.6  |
| 합계    | 9,927 | 100.0 | 315.4    | 100.0 | 9,491 | 100.0 | 3,830    | 100.0 |

※ 7A: 7년 비선형철폐 양허단계로 이행초기단계에서 관세폭을 크게 약화하는 방식

- 터키는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(터키 관세율 0~22% '07-'09년 평균 **對**터키 수출액 3억 9천만불)관련, 일부 중·대형 승용차(10%)는 협정 발효후 5년내 관세철폐, 1600cc이하 소형 자동차(터키 전체 승용차 시장의 90% 이상 점유) 4개 세번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후 7년 비선형 관세철폐로 대터키 수출 확대 전망

※ 터키는 우리의 16위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'09년이후 자동차 수출 증가추세 대터키 자동차 수출대수 (대): 3만2천('09년→5만('10년)→5만3천('11년)

#### 《7년 비선형 관세 철폐 스케줄》

|          | 이행1년차 | 이행2년차 | 이행3년차 | 이행4년차 | 이행5년차 | 이행6년차 | 이행7년차 | 이행8년차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관세율(10%) | 8.5   | 7     | 5.83  | 4.67  | 3.5   | 2.33  | 1.17  | 0     |
| 관세인하(%p) | -1.5  | -1.5  | -1.17 | -1.16 | -1.17 | -1.17 | -1.16 | -1.17 |

※ 7년 비선형 해당 세번: HST 8703221010, 8703231911, 8703311010, 8703321911

※ 이행 1년차란 발효되는 연도를 의미

- 그외 주요 수출품에 대해 7년이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, 우리 업계의 **對**터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  - 석유화학(터키 관세율 0~6.5%, '07-'09년 평균 **對**터키 수출액 3억 7천만불) 품목 대부분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철폐
  - 섬유(0~12%, 2억 7천만불) 관련,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섬장섬유사, 화섬단 섬유, 화섬직물 및 편직물 등이 5년 내로 관세 철폐
- ※ 특히, 섬유의 경우 Special Safeguard(일종의 산업보호관세로서 섬유 제품에 20~30% 추가 세금 부과)의 면제 혜택 확보
- 칼라TV(14%, 9천6백만불)는 7년 관세철폐, 냉장고(1.5~2.5%, 2천 1백만불)는 5년 관세철폐



## 《 한 · 터키 주요 수출입 공산품양허 비교 》

| 순위 | 우리 양허 (對터키 주요 수입품)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터키 양허 (對터키 주요 수출품)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| 품목명<br>(HS 10단위)        | 관세율<br>(%) | 수입(천불)<br>07-09 평균 | 우리<br>양허 | 품목명<br>(HS 10단위)        | 관세율<br>(%) | 수입(천불)<br>07-09 평균 | 터키<br>양허 |
| 1  | 기타액화석유가스                | 5%         | 39,583             | 0        | LCD                     | 무세         | 257,711            | 0        |
| 2  | 원유<br>(비중: 0.855~0.869) | 3%         | 31,990             | 0        | 무선통신기기                  | 무세         | 227,151            | 0        |
| 3  | 제87류차량용부품               | 8%         | 28,444             | 0        | 기타석유제품                  | 3.5%       | 114,356            | 0        |
| 4  | 원유<br>(비중: 0.841~0.847) | 3%         | 28,148             | 0        | 실린더용량 2500cc 초 과회물자동차   | 10%        | 91,467             | 7        |
| 5  | 나프타                     | 무세         | 8,392              | 0        | 기타부분품과부속품               | 3%         | 80,909             | 7        |
| 6  | 원유<br>(비중: 0.796~0.841) | 3%         | 6,739              | 0        | 실린더용량 1600~2000cc 디젤 차량 | 10%        | 79,195             | 7        |
| 7  | 아연광과그정광                 | 무세         | 6,520              | 0        | 무한궤도식굴삭기                | 무세         | 78,647             | 0        |
| 8  | 화물선                     | 무세         | 6,404              | 0        | 기타틸레비전 수신용의기기           | 14%        | 76,536             | 7        |
| 9  | 데님                      | 10%        | 5,971              | 0        | 프로펠伦공중합체                | 6.5%       | 72,304             | 0        |
| 10 | 정제하지 아니한동               | 무세         | 5,722              | 0        | 기타평판압연제품                | 무세         | 63,294             | 0        |
|    | (10대 수입소계)              |            | 167,913            |          | (10대 수출소계)              |            | 1,141,572          |          |
|    | 공산품 수입합계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315,413            |          | 공산품 수출합계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3,830,197          |          |

## 《 한 · 터키 공산품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》

(품목수 HS 10단위 기준)

| 한국 양허  |       | 양허유형   | 터키 양허 |   |
|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|
| 주요 품목  | 품목수   |        | 품목수   | 주요 품목   |
| 공기조절기, 금속절삭가공기계, 냉장고, 모자, 아연광, 양탄자, 의료용기기, 광물성 연료(나프타, 원유, 기타석유제품) | 9,365 | 즉시 철폐  | 7,389 | ABS합성수지, 기타플라스틱제품, 일부평판 압연제품, 기타알루미늄제품, 신변장식용품, 포트랜드시멘트, 합판, 섬유판, 파티클보드, 조립식목재건축물, 철도차량부품 |
| 내시경, 농약, 밸브, 베어링, 변압기부품, 펌프, 계측기, 대리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   | 3년 철폐  | 350   | 차량용고무타이어, 공기조절기, 원동기와 펌프, 볼트와너트, 기타산업기계, 가열난방기  |
| 조립식목재건축물, 제재목, 전동축, 알루미늄의 판 · 쉬트, 화강암, 가솔린경차, 가솔린/디젤 소형            | 233   | 5년 철폐  | 913   | 기타자동차부품, 면사, 편직물, 일부합성필라멘트사, 합성필라멘트사직물, 냉장고, 전동기, 가솔린/디젤 중 · 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 |       | 7년 비선형 | 4     | 가솔린/디젤 1600cc이하 소형승용차(4개 세번)  |
| 양모사, 섬수모사, 직물, 합판, 섬유판, 파티클보드(PB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9   | 7년 철폐  | 835   | 양모 및 섬수모 훈방직물, 기어박스, 평판 압연제품, 칼라 TV, 세탁기  |

## 2. 농수산물

- 양측은 농수산물 분야 10년이내 관세철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동일한 수준의 양허 달성
  - 10년이내 관세철폐 품목수 비중: 우리 52.5%, 터키 52.7%
  - 수입액 비중: 우리 96.7%, 터키 96.8%
- 우리는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, 쇠고기, 닭고기, 신선과일, 양념채소류등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 양허제외(품목수 기준 40.7%)하고, 양허 품목의 경우에도 관세부분감축, 장기관세철폐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확보
  - 【양허대상제외 및 현행관세유지】
    - 쌀 및 쌀 관련 제품(16개 세번)은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
    -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감귤, 포도, 갑오징어, 고추, 꿀, 넙치, 마늘등에 대해 추가개방 없이 현행관세 유지
  - 【관세부분감축】 민감정도에 따라 관세인하 수준을 10~30%로 조정, 인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유지
    - 사료용조제품(10%감축, 50.6%→45.5%), 소라(20%감축, 20%→16%), 기타 포도주(30%감축, 15%→10.5%)
  - 우리는 對터키 최대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(총 對터키 수출액의 55%차지)를 즉시 철폐하고, 수출 잠재력 품목인 김치, 면류(라면, 당면, 국수), 소주에 대해 즉시 철폐 확보



## 《한·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》

(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, 수입액은 2007~2009 평균 수입액 기준)

| 양허단계   | 우리 양허 |       |          |       | 터키 양허 |       |          |       | 양허단계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       | 품목    | 비중    | 수입액(백만불) | 비중    | 품목    | 비중    | 수입액(백만불) | 비중    |        |
| 즉시     | 194   | 9.9   | 3.5      | 8.1   | 479   | 18.4  | 4.8      | 68.5  | 즉시     |
| 5      | 201   | 10.3  | 17.9     | 40.8  | 62    | 2.4   | 0.3      | 4.2   | 5      |
| (5년내)  | 395   | 20.2  | 21.4     | 48.9  | 541   | 20.7  | 5.1      | 72.7  | (5년내)  |
| 7      | 21    | 1.1   | 2.1      | 4.9   | 34    | 1.3   | 0        | 0.0   | 7      |
| 10     | 609   | 31.2  | 18.8     | 42.9  | 801   | 30.7  | 1.7      | 24.1  | 10     |
| (10년내) | 1,025 | 52.5  | 42.4     | 96.7  | 1,376 | 52.7  | 6.8      | 96.8  | (10년내) |
| RD     | 134   | 6.9   | 0.2      | 0.6   | 175   | 6.7   | 0.0      | 0.5   | RD     |
| 양허제외   | 795   | 40.7  | 1.2      | 2.7   | 1,060 | 40.6  | 0.2      | 2.7   | 양허제외   |
| E      | 599   | 30.7  | 1.1      | 2.5   | 748   | 28.6  | 0.1      | 1.6   | E      |
| NS     | 180   | 9.2   | 0.0      | 0.2   | 312   | 11.9  | 0.0      | 1.1   | NS     |
| R      | 16    | 0.8   | 0.0      | 0.0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|
| 합계     | 1,954 | 100.0 | 43.9     | 100.0 | 2,611 | 100.0 | 7.1      | 100.0 | 합계     |

## 《한·터키 주요 수출입 농수산물 양허 비교》

| 순위 | 우리 양허 (对터키 주요 수입품)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터키 양허 (对터키 주요 수출품)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| 품목명<br>(HS 10단위)   | 관세율<br>(%) | 수입(천불)<br>07-09 평균 | 우리<br>양허 | 품목명<br>(HS 10단위)   | 관세율<br>(%)              | 수입(천불)<br>07-09 평균 | 터키<br>양허 |
| 1  | 잎담배(오리엔트종)         | 20%        | 6,379              | 10       | 기타커피               | 9%                      | 3,858              | 0        |
| 2  | 기타조제어류             | 20%        | 6,325              | 5        | 기타담배               | 25%                     | 702                | 10       |
| 3  | 잎담배(오리엔트종)         | 20%        | 3,205              | 10       | 잎담배(황색종)           | 25%                     | 592                | 10       |
| 4  | 해바라기씨유             | 10%        | 3,120              | 5        | 기타제조담배             | 16.6%                   | 381                | 0        |
| 5  | 밀가루                | 4.2%       | 2,648              | 10       | 고등어                | 53%                     | 356                | 10       |
| 6  | 참다랑어(피레트)          | 10%        | 2,601              | 5        | 청어                 | 53%                     | 208                | 5        |
| 7  | 헤즐너트               | 8%         | 1,837              | 7        | 면류(기타 파스타)         | 6.4+40.27/EUR/100kg/net | 159                | 0        |
| 8  | 채소주스               | 30%        | 1,812              | 10       | 기타제조담배             | 16.6%                   | 147                | 0        |
| 9  | 초콜릿및초콜릿과자          | 8%         | 1,409              | 5        | 한천                 | 무세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| 0        |
| 10 | 참다랑어(냉동)           | 10%        | 1,076              | 5        | 기타주스               | 58.5%                   | 96                 | E        |
|    | (10대 수입 소계)        |            | 30,412             |          | (10대 수출 소계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6,600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| 농수산물 수입 합계         |            | 43,886             |          | 농수산물 수출 합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7,062              |          |

## 《한·터키 농수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》

(품목수 HS 10단위 기준)

| 한국 양허  |     | 양허유형  | 터키 양허 |  |
|--|-----|-------|-------|--|
| 주요 품목  | 품목수 |       | 품목수   | 주요 품목  |
| 파스타, 토마토페이스트, 건포도, 토마토케찹, 조제식료품, 타임및월계수잎, 올리브유및그분획물, 밀(사료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4 | 즉시 철폐 | 479   | 인스턴트커피, 담배(완성품), 라면, 기타조제식료품, 소주, 김치, 간장, 된장, 맥주, 유아용조제식료품, 한천, 황다랑어 |
| 초코렛(속을채운것), 올리브유(버진), 드롭프스, 레몬, 스파게티, 사탕수수, 인스턴트커피, 참다랑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 | 5년 철폐 | 62    | 밀의글루텐, 인삼류, 선인장, 장미, 겨자씨, 개 및 고양이사료, 청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잼, 버터조제품, 무화과(신선/건조), 맥주, 식염, 헤즐넛  | 21  | 7년 철폐 | 34    | 튤립, 글라디올러스, 밀크알부민, 고래류   |
| 잎담배(오리엔트종), 밀가루, 코코아페이스트, 레몬주스, 옥수수유, 겨자유, 간장, 위스키, 와인, 해바라기씨조유, 포도주스, 멸치통조림, 파래, 김, 피스타치오 | 609 | 10년   | 801   | 잎담배(황색종), 양배추, 오이, 감자, 콩, 고등어, 연어, 넙치, 참다랑어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조사료, 코코아분말, 해삼, 멸치, 송어, 개, 꿀, 흥합, 아귀, 가오리   | 134 | RD    | 175   | 요구르트, 추잉껌, 마가린, 설탕과자, 송어   |
|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고추, 마늘, 양파, 포도, 오렌지, 감귤, 갑오징어(냉동), 꿀, 전복, 밤, 잣, 대추, 호두                     | 599 | E     | 748   | 흔합주스, 파인애플, 베찌, 살구   |
| 기타컬련, 로얄제리, 아이스크림  | 180 | NS    | 312   | 닭고기, 우장, 치즈, 베   |
| 쌀  | 16  | R     | 0     | -  |



# 10 원산지 규정

## 개요

- 터키-EU간 관세동맹\* 관계를 고려하여 한-EU FTA상의 특혜 원산지 규정을 기본으로 합의하되,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쿼터 물량을 설정
  - \* 터키-EU 관세동맹에 따라 터키는 EU의 FTA 상대국과 FTA 협상시 EU가 그 국가와 체결한 FTA의 원산지 규정과 맞춰야 할 의무를 부담
- 한-EU FTA와 마찬가지로,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조달 비율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
  - 전기 · 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변변경기준과 부가 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
  - 설탕과자, 초콜릿 함유 식료품, 기타 비스킷 등 일부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한 · EU FTA보다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, 면사, 재생필라멘트 직물,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는 각각 연간 200톤의 원산지 예외쿼터를 설정하여 교역을 촉진
-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 마련
  - 한-EU FTA에서와 같이, 한-터키 FTA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

## ■ 상세 내용

### 1. 원산지 일반 규정

#### 가. 특혜 원산지 기준

- FTA 특혜원산지 판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,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 및 각 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을 원산지 의정서에 규정
  -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각 품목별 생산과정,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추세를 반영하여 정교한 판정기준을 마련
- 양측은 완전생산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
  - ①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
  - ②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
  - ③ 양국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
  - ④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
  - ⑤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,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
  - ⑥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선박에 의한 어로행위로 획득된 상품 및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
  - ⑦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공정으로부터의 폐기물 및 부스러기
  - ⑧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채취된 상품. 다만, 당사국은 그 해저나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함.
- 양국은 완전생산기준이외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
  -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,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 규정
- 부가가치 기준 (VAR, Value Added Rule)
  - 한·EU FTA에서와 마찬가지로, 부가가치기준은 공장도가격을 기준가격으로



하고, 허용된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

※ 예 :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0% of the ex-works price of the product

- 공장도 가격 :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.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, 동 상품의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

### 《 세번변경 기준 》

-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(HS번호)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(예:HS 2단위, 4단위, 6단위)기준으로 차이가 있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

– 예 : 원유(HS2709)를 수입하여 석유(HS2710)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 변경

### 《 세번변경 기준 》

-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최종 생산물의 일정 수준 이하(예 : 공장도 가격 기준의 45%)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

### 《 세번변경 기준 》

- 화학반응, 정제공정,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

## 나. 미소(De Minimis) 기준

- 양국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서 역외산 재료(non-originating material)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(공장도가)의 10%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합의

※ 미소기준은 원산지기준 판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FTA에 반영

- 단, 섬유류(50~63류)에 대해서는 일반 미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해(Introductory Notes)에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섬유미소기준 적용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·터키 FT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·미 FTA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섬유류<br>(50~63류)<br>미소기준 | 품목마다 다른 미소기준 적용<br>- 8~35%, 중량 및 공장도가격기준 등 다양 | 중량기준 7% |

#### 다. 대체가능 재료 및 물품

-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를 인정
  -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 도입
  -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재고 관리를 위한 구분 회계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
    - 회계기법은 당해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(GAAP)에 따라 기록, 유지

#### 라. 기타 주요내용

- 누적기준
  - 역내산(터키산 및 한국산)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도입
- 세트 물품



-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가격의 15% 이하인 경우에는 세트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

### ■ 중립재료

- 제품의 생산에 사용은 되었으나 최종재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은 연료, 도구, 장비 등의 재료는 원산지 판정을 하는데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

### ■ 직접운송 원칙

- 한·터키 양국이 아닌 제3국(경유국)에서 ① 단순하여 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나 ② 세관 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합의
- 제3국에서 전시된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전시 후에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경우, 그 상품이 한-터키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

## 2. 품목별 원산지 규정

### 가. 주요 특징

- 터키-EU간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한-EU FTA상의 특혜 원산지 규정을 기본으로 합의하되,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쿼터 물량을 설정
- 설탕과자(HS 1704), 초콜릿 함유 식료품(HS 1806) 및 기타 비스킷(ex HS 1905.90)에 대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채택하여 한·EU FTA보다 원산지 기준을 완화
- 또한, 우리의 대 터키 수출이 많거나 수출이 유망한 면사(HS 5205), 재생필라멘트 직물(HS 5408)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(HS 5510)에 대해서는

각각 연간 200톤의 원산지 예외쿼터를 설정하되, 한국과 터키 양국이 각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함.

#### 나.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

| 품 목         | 원산지 기준   |
|-------------|--|
| 자동차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완성차: 역외산 부품비율 45% 이하</li> <li>- 자동차 부품: 역외산 부품비율 50%이하 또는 세번변경기준(CTH)</li> <li>- 모터사이클, 트레일러 등 기타자동차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%에 합의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철도차량은 세번변경기준, 자전거는 역외산 허용치 45%를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 |
| 기계, 전기 · 전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번변경기준(CTH)과 역외산 부품사용비율 45~50%중 선택</li> </ul>   |
| 의 류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물기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직물기준 (Fabric Forward) : 한 · 미 FTA의 원사기준(Yarn—Forward)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2단계의 공정을 거치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종 변형기준이라고도 함</li> </ul> </li> </ul>  |
| 화학제품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(CTH) 적용</li> </ul>   |
| 비철금속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리와 알루미늄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세번변경기준(CTH) 적용</li> </ul>  |
| 신 발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역외산 갑피(upper)와 안창 사용(inner sole)이 인정되나, 갑피가 안창에 부착된 채로 수입된 것은 허용하지 않음.</li> <li>- 다만, 선택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50%이하 기준 적용가능</li> </ul>  |

#### 다. 주요 농 · 수산물 원산지 규정

| 대상품목                      | 원산지 기준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쌀 · 녹차 · 인삼 · 참기름 및 관련 제품 | 역내산 (완전생산기준)사용         |
|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           | 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(완전생산기준) |
| 수 산 물                     | 역내에서 어획된 것(완전생산기준)     |



### 3. 개성 공단

-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 (한·EU FTA와 동일한 문안 채택)
  - 원산지 의정서 및 동 부속서에서 규정
  - 한·터키 양국이 “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(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)”를 구성, 역외가공지역(OPZ)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
  - OPZ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정 요건하에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 관세를 부여 받으며, 개성공단 외 다른 지역도 OPZ로 선정 가능

#### 《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요》

- 구성 및 운영 :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, 협정 발효후 1년 후 개최 (매년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 개최 가능)
- 기능
  -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지정
  - 동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OPZ 지정기준의 충족여부의 판정
  - OPZ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OPZ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비율을 설정

# 11 원산지 절차

## 개요

- 원산지 절차는 원산지 증명 방식, 특혜관세 신청 절차 및 원산지 검증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
  - 원산지 증명은 전면 자율증명 방식을 도입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가 인증수출자에 한정되지 않도록 함
  - 원산지 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

## 상세 내용

### 1. 원산지 증명 방식 : 자율증명

- 원산지 증명은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
  -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증명이 가능한 한-EU FTA와 달리 증명서 발급 주체를 인증수출자로 한정하지 않음

### 《 한 · EU, 한 · 터키 FTA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》

| 구분        | 한 · EU FTA              | 한 · 터키 FTA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제도        | 자율증명                    | 자율증명       |
| 증명서 발급 주체 | 수출국 관세당국이<br>지정하는 인증수출자 | 수출자        |

- 원산지 증명서는 한 · EU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인보이스 신고(Invoice Declaration) 방식을 채택



## 2. 특혜관세 신청절차 기타 사항

- 원산지 증명서(Origin Declaration)는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
-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
  - 소액의 개인용 물품과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생략
    - 금액한도는 터키의 경우 개인용품은 500유로 이하, 개인수하물은 1,200유로 이하이며, 우리의 경우 구분 없이 미화 1,000불 이하
-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, 특혜 관세 사후신청 가능
  - 수입통관 1년(우리 수입) 또는 2년(터키 수입) 이내에 가능
- 원산지 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  
※ 특혜관세 신청절차 관련 조항은 한·미 및 한·EU FTA의 내용과 대부분 유사

## 3. 원산지 검증 (verification)

- 특혜관세 진위 여부 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도입
  - ※ 직접검증 :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 (verification visit) 등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증
  - ※ 간접검증 :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, 수출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
- 한·EU FTA 원산지 검증제도와 상당부분 유사

-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하되,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시 수입국 관세 공무원 입회가능
-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및 여타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
  - 우리의 관세부과 제척기간(5년)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도록 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
    - ※ 증빙서류 : 수출물품의 구매 · 가격 · 평가 · 지불에 관한 서류, 원재료의 구매 · 가격 · 평가 · 지불에 관한 서류,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증빙서류 등
  -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비용부담 및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    - ※ 전자방식 등 다양한 매체에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국내법에 기반영된 사항(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)
-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을 바로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
  - 원산지 규정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  - 당초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
  - 원산지 증명서가 비당사국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경우
  - 수입국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

#### 4. 관세환급

-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후 필요시 관세위원회에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
  - 한·EU FTA 상 규정된 발효 후 관련 통계교환 의무 및 관세환급 제한시 환급 가능한 상한선을 삭제함으로써 한·EU FTA보다 완화된 조항 도입



# 12 관세 및 무역원활화

## 개요

- 관세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상품 수출입 과정에 수반되는 통관 절차와 관세협력 관련 내용을 규정
  -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· 신속화에 대한 사항과 수출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및 양측 관세당국간의 협력증진 등을 규정

## 상세 내용

### 1.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

- 신속한 물품반출을 통한 양국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당사국의 간소화된 통관절차 유지 의무 규정
  - 신속한 화물반출 및 반출시간 단축 노력 의무 규정
  -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전 사전신고,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, 부두직통관 제도 도입
-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위험 화물은 중점 검사하되, 저위험 화물은 통관 및 반출 절차를 간소화
  - 위험성이 낮은 대부분의 화물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어 우리 기업 물류비용 절감 및 생산성 증대 기대

※ 현재 우리 관세당국은 화물위험관리시스템(Cargo Selectivity System)을 개발하여 화물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검사하는 제도를 운영중

## 2. 관세행정의 투명성 증대

- 관세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관세 법령 및 관세행정 절차의 공표를 의무화
  - 이해관계인의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안내창구(inquiry point) 운영 의무
  - 관세 법령 및 관세행정 절차의 중요한 개정사항은 상대국 관세당국에 적시에 통보토록 노력

※ 현재 우리 관세당국은 관세법령과 행정규칙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고, 관세청에 콜센타를, 각 세관관서에 민원전담창구를 설치·운영 중

## 3.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

- 품목분류 및 원산지 등에 관한 무역업자의 의문사항에 대해 수입국 관세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 제도 규정
  - FTA 특혜관세 신청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특히 영세 중소무역업체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 기대
  -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판정 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

## 4. 불복청구 절차

- 수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세결정에 관한 불복청구권 보장
  - 수출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수입국 행정심판 당국에 소명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
  - 원산지 소명자료는 제품원가 등 기업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기 곤란하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

## 5. 자료 비밀유지

- 자료를 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수입국 행정심판 당국의 자료비밀 보장의무 규정
  - 비밀자료는 제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 목적이외의 사용을 금지
  -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하는 경우 제출자에게 사전 통보 의무화

## 6. 관세협력 확대

- 세관분석 기법 조화, 세관공무원 교환, 공동훈련 프로그램, 지식재산권 단속 및 화물 보안 등 관련한 관세협력 확대 추진
- 기존 “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”에 따라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함
- 원산지, 통관, 무역원활화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정된 연락처(contact point) 목록을 상호 교환하기로 함

## 7. 관세위원회

- 공동위원회(Joint Committee) 산하에 관세위원회(Customs Committee)를 설치하여 원산지, 통관, 무역원활화 관련 문제를 협의
  - 통관지연, 품목분류, 원산지 등 관련 분쟁발생시 일방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관세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# 13 무역구제

## 개요

-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
  - 무역구제조치 발동 관련 요건을 강화하여 WTO에서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한 양자 세이프가드 또는 반덤핑·상계 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

## 상세 내용

### 1. 양자 세이프가드 (Section A)

-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의 결과로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(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s)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(serious injury or threat)가 있을 경우,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(MFN) 관세율까지 관세인상 가능
  - 원칙적으로 협정발효 후 10년 동안 발동 가능
  - 발동기간은 2년이며, 1년간 연장 가능(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최대 한도)
- 동일 상품에 대한 재발동 전면 금지, 보상·보복 규정을 도입하여 FTA 무역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양자세이프가드 남용을 방지



## 2. 다자 세이프가드 (Section B)

-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권한 보유

- 단,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의 동시 발동은 금지

## 3. 반덤핑 및 상계관세 (Section C)

- 반덤핑마진 계산시 ‘제로잉 금지’를 명시적으로 규정

※ 제로잉 금지 : 반덤핑마진 계산시 양 또는 음의 값에 상관없이 모든 개별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  
하도록 함으로써, 음의 마진을 임의로 누락하여 총 덤플링마진이 높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

-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는 덤플링 마진 또는 보조금 마진이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,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부과 가능(“Lesser-duty Rule”)

※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상 ‘Lesser duty Rule’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, 적용의무는 미규정(WTO 반덤핑 협정 제9.1조,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협정 제 19.2조)

- 반덤핑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상대국에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 사실을 통보

※ WTO 반덤핑 협정은 조사 개시 전 통보의무만 규정(WTO 반덤핑 협정 제5조)

- 덤플링 마진이 수출가액의 2% 미만일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미소기준 (de minimis) 확대 적용

- WTO 반덤핑 협정 제5.8조에 따른 원심(original investigation)뿐만 아니라,  
종료재심 · 신규 수출자 재심 · 상황변동 재심 등 재심(review)에도 적용됨을 명시

※ WTO 반덤핑 협정상 미소기준은 원심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을 뿐, 재심에 대해서는 적용여부가 불투명

- 다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,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한지를 ‘특별한 주의’를 갖고 검토할 의무를 부과(“non-cumulation”)
  - ※ WTO 반덤핑 협정상 합산여부는 조사당국의 재량(WTO 반덤핑 협정 제3.3조)
-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항은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외



# 1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(TBT)

## 개요

- 표준, 기술규정, 적합성평가 등이 양국간 상품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에 대해 규정
  - 기술규정, 적합성평가의 제·개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, 공동협력 강화, 양측간 협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TBT 조정자 지정 등을 포함

## 상세 내용

### 1. 투명성 (상품무역협정 제5.10조)

-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 관련 법령 등을 제·개정할 경우 자국에 소재하고 관련 법령에 등록되어 있는 상대국의 이해관계자(economic operator)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
- 제·개정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(안)을 WTO에 동시에 상대국에도 통보
-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제·개정 시, 상대측이 요청하는 경우동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제·개정 목적(objective), 정당성(reasonable) 등 정보를 제공
  - ※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기술규정의 채택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기여(통상마찰 사전예방 효과 기대)
- 제·개정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된 웹사이트 등 설립
  - ※ 우리나라 TBT 통합포털정보사이트([www.tbt.kr](http://www.tbt.kr))에서 기술규정 제·개정 사항 및 TBT 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

- 제 · 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(안)을 WTO에 통보한 후 가능한 경우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부여

## 2. 공동 협력 (상품무역협정 제5.3조)

- 양국간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불필요한 차이를 줄이고 수렴(converging) 또는 정합(aligning) 가능성을 검토
  - ※ WTO TBT 협정에는 타국 기술규정이 자국 규제목적 달성에 충분한 경우 타국 기술규정을 자국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권장(2조 7항)
-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 관련 상대국이 논의를 요청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고려

## 3. TBT 조정자(Coordinator) 지정 (상품무역협정 제5.8조)

- TBT 챕터의 이행, 관련 사안의 협의 및 해결 등을 위해 TBT 조정자를 지정
  - 양측은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정례위원회(TBT committee)는 설치하지 않는 대신, TBT 조정자를 지정하고 필요시 작업반(working group)을 구성

※ TBT 조정자 : 우리측 기술표준원 및 터키측 경제부 제품안전검사국



# 15 예외 및 최종 규정

## ■ 예외

### 1. 조세 예외 (기본협정 제8.1조)

-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, 이 협정과 여타 조세조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
  - 다만, 예외적으로 내국민대우 조항 및 수출세 관련 조항은 조세조치에 적용

### 2. 국제수지 예외 (기본협정 제8.2조)

- 양국은 국제수지 목적의 조치 가능
  - 단, 그 조치는 비차별적으로 시행

### 3. 안보 예외 (기본협정 제8.3조)

- 공개시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하는 경우, 해당 정보의 비공개 가능
-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 또는 국제 평화 및 안보 관련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가능

## ■ 최종 규정

### 1. 협정 발효

- 양국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두 번째 달 첫째일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시점에 협정 발효

### 2. 협정 종료

- 한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, 6개월 경과후 협정 효력이 종료

### 3. 기타

- 협정 개정은 서면으로 합의 가능

- 양국이 각자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시점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시점에 협정 개정 효력 발생

-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경우, 양국은 가입 결과에 관한 협의 개시

- 한국어, 터키어 및 영어 협정문이 모두 동등한 정본

- 단, 불일치시 영어본이 우선



# 한·터키 FTA 상세설명자료

인쇄 · 2012년 7월

발행 · 2012년 7월

---

발행처 ·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협상총괄과  
주 소 · (100-787)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
TEL · (02)2100-0861 FAX · (02)2100-8097

인쇄 · 우신기획